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

제정 2020년 12월 11일 조례 제1859호 일부개정 2024년 5월 17일 조례 제2168호 (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오산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정함에 있어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 등이 반영된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오산시 지역문화활성화 및 오산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"지명"의 뜻은 다음과 같다. 〈개정 2024. 5. 17〉

연번	유형	예시
1	육상지명	산지, 하천, 호수 등
2	시설물명	교량, 공원, 관공서, 철도역, 터널, 광장, 건축물 등
3	국가유산명	궁궐, 성곽, 왕릉, 사찰 등
4	행정지명	행정구역, 도로명 등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오산시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모든 지명에 적용한다.

제4조(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) ① 오산시장은 오산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- 1. 자연물 및 인공물의 실제현황, 지역 실정과 부합 여부
- 2. 다른 지명과 유사한 지명 사용으로 인한 시민의 혼동 가능성 여부
- 3. 오산시와 관련 없는 타 지역의 지명 사용 여부
- 4. 해당 지역의 상징성, 역사성, 기원성, 전통성, 정체성, 합리성과 공익성 등을 지명에 반영한 여부
- 5. 기타 지명 사용 근거가 부정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지명 사용 여부
- ② 오산시장은 지명 사용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명

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

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반영한다.

부칙
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- 부칙〈2024. 5. 17 조례 제2168호,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〉
-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